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8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서미화・윤건영・강준현

권향엽 · 김남근 · 소병훈

박희승 • 전현희 • 백혜련

권칠승 · 윤종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, 한 의사, 치과의사,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,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·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,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·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.

아울러,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고도화되고 있으며,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'24.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.82%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.

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

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.

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,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3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59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3조의2(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요청)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 물품의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,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
 - 1.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
 - 2.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수입물품의 강제징 수 사유가 해소된 경우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 -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징수의 위탁, 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의 철회 및 그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3조의2(불법개설기관 고액체
	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
	수의 요청) ① 공단은 제57조
	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
	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
	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
	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
	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
	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
	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
	게 위탁할 수 있다.
	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
	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위탁
	을 철회하고, 그 사실을 세관장
	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	1.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
	<u>10 이상을 납부한 경우</u>
	2.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
	보의 제공 등으로 수입물품의
	강제징수 사유가 해소된 경우
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징수의 위탁, 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의 철회 및 그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